

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(제7조의6제5항 관련)

1. 평가대상

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·운용하는 도축업·집유업 영업자의 작업장

2. 평가기준

가. 도축장

구분	평가항목
인프라 구축 정도	도축검사 라인, 구내 조경, 민원·악취 발생, 폐수처리, 도축장 내 식육포장비율,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, 도축장의 전체 면적 등
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	도축장의 위생관리, 시설관리, 위해요소의 분석,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

나. 집유장

구분	평가항목
인프라 구축 정도	집유라인, 구내 조경, 민원·악취 발생, 폐수처리,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, 집유장의 전체 면적 등
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	집유장의 위생관리, 시설관리, 위해요소의 분석,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

다. 삭제 <2020. 10. 20.>

라. 삭제 <2020. 10. 20.>

마. 삭제 <2020. 10. 20.>

바. 삭제 <2020. 10. 20.>

3. 평가절차 및 방법 등

가. 평가 수행기관 또는 단체는 평가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나. 평가방법에는 현장실사가 포함되어야 한다.